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제6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

2014. 11. 21

전문위원 : 임 선 악

1. 제안경위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의안번호 38)
- 제출일자 : 2014. 11. 18
- 위원회 회부일자 : 2014. 11. 18

2. 제출이유

-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종료(2011. 01. 01 ~ 2014. 12. 31)되어,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므로 제6기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성북구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 건강격차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개선
-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 활성화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계획안으로,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여는 희망도시 성북”을 위한 비전을 목표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건강격차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개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4개의 전략과제와 16개 추진과제, 2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사람이 희망인 건강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해 성북구민에게 최고수준의 건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목적으로 마련한 본 계획안은 적절하게 수립 되었다고 사료됨.

5.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침 발전방향
4.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6.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태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